

2026학년도 2학기 천안캠퍼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

I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및 실습기관 신청 안내

- 근거: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 제2025-36호, 2025. 12. 22. 시행)
- 목적: 산학협력 연계 강화 및 전공관련 직무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: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현장실습학기제
- 실습 기간 및 시간
 - 실습기간: 2026. 9. 1.(화) ~ 2026.12.31.(목) ※ 16주 또는 4개월
 - 실습시간
 - 1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 기준으로 주 5일 운영
<단,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,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함>
 -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,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함
<단,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>
 - 야간 현장실습(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)은 운영할 수 없음
<단,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, 대학과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협의한 후 실습생이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>
- 보험 가입: 상해보험(대학)과 산재보험(실습기관)은 실습 시작일 이전 필수 가입해야 함
- 실습생 지원 자격
 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3학년 1학기부터 참여)
 -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이 가능한 재학생
 -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을 갖춘 재학생

※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(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)

-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및 선발하는 경우
- (실습기관과 실습생 간) 취업(조기 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

II 실습기관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: 7. 6.(월) ~ 7. 20.(월) 까지 수시 접수
- 제출방법: 이메일(hjy7262@smu.ac.kr) 접수
- 제출서류
 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
 - 사전 서면점검서[신규 실습기관용]
 - 사업자등록증 <신규 실습기관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 제출>
- 문의처: 대학일자리본부 천안캠퍼스 현장실습·일경험지원팀 <041-550-5111, 041-623-0369>
- 실습기관 점검
 - 화학물질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의 경우 실습기관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시행 예정임
 - 신규 참여 실습기관,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함
- 3자 협약 체결
 -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, 학생, 실습기관 간 3자 협약을 체결함
 - 학교의 대학일자리본부장 ↔ 실습기관의 대표자 ↔ 학생 간 체결
 - 진행 절차
 -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협약서 초안 이메일 전달 후 상호 확인 후 실습기관 직인 날인 후 협약서 컬러 스캔본 대학 송부
 - 실습기관 날인 협약서에 대학/학생의 날인/서명 후 실습기관 및 실습생에게 협약서 스캔본 송부

7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단계별 일정 및 주요 내용

운영단계	운영일정	주요내용
① 실습기관 모집	7. 6.(월) ~ 7. 20.(수)	수시 접수
② 실습기관 검토 및 확정	~ 7. 22.(수) 까지	검토 및 확정
③ 실습기관별 학생 모집	~ 7. 31.(금) 까지	실습기관 모집 및 접수
④ 실습기관별 실습생 선발 마감	~ 8. 14.(금) 까지	학생 선발 완료 <서류 및 면접전형>
⑤ 실습생 사전교육	~ 8. 25.(화) 까지	현장실습학기제 준비
⑥ 3자(실습기관+대학+실습생) 협약 체결	~ 8. 28.(금) 까지	
⑦ 산재(실습기관)/상해(대학)보험 가입		
⑧ (학생) 중간점검	9. 1.(수) ~ 12. 31.(목)	현장실습 진행
⑨ (실습기관) 현장점검		
⑩ (실습생) 종합보고서/ 만족도	~ 2027. 1. 8.(금) 까지	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 제출 서류
⑪ (실습기관) 실습평가표/ 출석부		

※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및 학점인정은 현장실습 종료 시 제출 서류 제출 완료 후 진행됨

III 실습기관 자격 및 참여 혜택

1. 실습기관 자격 기준

가.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(중소·중견기업 등 포함) 및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

나. 전공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가능 기관

다. 실습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

- 1)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- 2) 학생의 보건, 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
- 3)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, 설비,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
- 4)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할 것
- 5) 현장실습학기제 운용 및 학생 지도, 관리를 담당할 현장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것
- 6) 기타 교육부 고시(제2025-36호, 2025. 12. 22. 시행)를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,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

2. 실습기관 불인정 기준

가.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및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사업

나.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관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

다.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
라.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1) 소비, 향락, 근로자 파견, 근로자 공급 등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
- 2)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한 사업체
- 3) 단단계 판매업체 및 단순 용역업체(경비, 건물관리, 청소, 주차 등)
- 4)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실습기관
- 5)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

3. 실습기업 참여 혜택

혜택사항	세부내용
① 우수인재 확보 및 채용 연계	- 실무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갖춘 학생 선발 가능 - 현장실습을 통한 인재 검증 후 채용 가능 및 채용 비용 절감
② 실습지원비 환급 (표준 현장실습학기제)	- 학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→ 실습 종료 후 기업에 25% 환급 -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미해당
③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마일리지 적립 (표준 현장실습학기제)	-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-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(정부사업 선정우대, 금융혜택 등)

4. 실습기관 준수사항

- 가. 실습기관은 실습 개시 전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실습 시작 후 1주일 내 대학으로 제출해야 함
- 나. 실습기관은 실습생(학생)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시간을 배정해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
- 다.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, 수행과정,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함
- 라. 실습기관에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/100 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해 운영해야 하고, 교육 시간과 실습시간 비율을 실습기관 참여신청 서류에 기재해야 함
- 마. 교육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실습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, 교육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
- 바.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의 실습기관 운영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- 사. 실습기관은 실습 첫날 실습생에게 기관 소개, 교육일정 및 실습내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현장실습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OT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
- 아.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
- 1)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, 실습생이 1개월 이상 출석하여 실습한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해야 함
 - 2)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,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
 - 가)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 수행일
 - 나)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, 사망 등 경조사일
 - 다)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
 - 3)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 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, 실습생, 학교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
 - 4) 기계작동 및 실험 기반 실습 등의 경우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함
 - 5) 공휴일, 휴일(추가적 유급휴일 포함)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해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 학기제가 시행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함
 - 6) 재난 상황 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,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25%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
 - 가) 재택실습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 일수로 인정함
 - 나)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함

5. 실습지원비 지급

- 가.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대학을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음
- 나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
- 1)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지급하며, 대학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게 실습지원비(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×실습시간×25%: 539,220원)를 지급함
 - 2) 실습지원금 예시 (1개월 기준)

구분	교육비중	실습비중	실습기관 실습지원금 실습기관->실습생	대학 실습지원금 대학->기업
표준 현장실습학기제	25%(120분)	75%(360분)	2,156,880원	539,220원

※ 대학에서 실습기관에 제공하는 실습지원금은 실습 종료 후 일괄 지급함

※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: 10,320원

- 다. 실습지원비 산출방법 지급기준: 실습기관 규정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아래 산출방법으로 지급
- 1) 주 단위 실습지원비: (시간급 최저임금액 × 주 단위 실습시간 수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 - 2) 월 단위 실습지원비: (시간급 최저임금액 × 월 단위 실습시간 수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 - 3) 직무수행 실습시간: 전체 실습시간 - 교육시간
- 라.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소득세 과세 여부 안내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
※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 3. 9.

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IV

천안캠퍼스 전공 현황

단과대학	소속 학(부) 및 전공
글로벌인문학부대학	한국언어문화전공, 일본어권지역학전공, 중국어권지역학전공, 영어권지역학전공,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, 독일어권지역학전공, 러시아·중아시아지역학전공
디자인대학	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, 패션디자인전공, 텍스타일디자인전공, 스페이스디자인전공, 세라믹디자인전공,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, AR·VR미디어디자인전공, 스마트리빙디자인융합전공, 트랜스미디어디자인융합전공
예술대학	영화영상전공, 연극전공, 무대미술전공, 사진영상미디어전공, 디지털만화영상전공, 문화예술경영전공, Si미디어콘텐츠전공, 스마트게임&콘텐츠융합전공
융합기술대학	글로벌금융경영학부, 식품공학과, 그린스마트시티학과, 간호학과, 사회체육전공, 스포츠경영전공, 글로벌마케팅융합전공
공과대학	전자공학과, 소프트웨어학과,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, 경영공학과, 그린화학공학과, 건설시스템공학과, 정보보안공학과, 시스템반도체공학과, 휴먼지능로봇공학과, AI모빌리티공학과, 지능형로봇공학과, 스마트IT융합공학과

※ 단과대학 및 전공 설명자료: <https://www.smu.ac.kr/kor/edu/cheonan01.do>

V

제출서류 양식 : 별첨

1. 서식2-1(표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)
2. 서식3(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용)) [신규 실습기관 발굴 시 제출]
3. 기업관련 제출서류 작성예시 압축파일